

부산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3가단33164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부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피고1. A

2. B

피고 B의 보조참가인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변론 종결2024. 11. 20.

판결 선고2024. 12. 18.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5,767,175원 및 그 중 25,766,810원에 대하여 2023. 4. 20.부터 2023. 8. 8.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22. 10. 2. 체결된 증여계약을 13,273,133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3. 피고 B는 원고에게 13,273,1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비용을 포함하여 피고들과 피고 B의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의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B의 보조참가인이 이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어 그 보조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의 보조참가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단136415호로 피고 A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고, 피고들 사이의 주문 제2항 기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피고 B를 상대로 그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4. 7. 11.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판결이 2024. 8. 17.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소송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취소됨에 따른 원상회복을 원고의 주장처럼 가액배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피고 B의 보조참가인의 주장대로 피고 B으로 하여금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행 중인 부산지방법원 C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에서 배당받을 잉여금 상당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할 경우, 피고 B의

보조참가인은 위 잉여금 상당의 배당금으로부터 피고 A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이 피고 B의 보조참가인이 그 채권을 실질적으로 더 많이 변제받을 길을 확보하는 것을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나 장래의 기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B의 보조참가인은 이 소송의 결과에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의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므로 이를 허가한다.

4. 피고 B의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의 보조참가인은, 피고 B은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13,273,133원의 잉여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원고의 가압류 때문에 위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취소됨에 따른 원상회복은 피고 B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잉여금 상당액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하게 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피고 A에게 위 잉여금 상당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도록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3. 5. 22. 이 사건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2024. 6. 18. 배당기일에서 그 매각대금에 이자를 가산하고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18,446,753원 중 부산광역시 동구가 당해세 94,830원, 조세 357,980원, D조합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04,720,810원을 각각 배당받고, 원고가 가압류권자(부산지방법원 2023카단52763)로서 잔액 13,273,133원을 배당받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이후 E이 2024. 4. 26.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2023. 7. 17. 부산지방법원 2023카단52763호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피고 B에 대한 가액배상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선순위 조세채권자와 근저당채권자가 배당받고 남은 13,273,133원은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었고, 비록 원고가 아직까지 가압류에 따른 집행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위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배당표상 피고 B에게 배당된 잉여금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 B의 잉여금 상당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물론 원고의 가압류가 없었다면 원고에게 배당된 13,273,133원은 아마도 피고 B에게 잉여금으로 배당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미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가압류가 집행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가압류권자로서 위 금액을 배당받는 내용으로 배당표까지 작성된 마당에, 그러한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이 사건 배당표에 기재되지도 아니한 피고 B의 잉여금 상당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인정할 근거는 없다.

한편 피고 B의 보조참가인은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을 근거로 피고 B이 위 잉여금 상당의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못하였으니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여서는 안 되고, 피고 B으로 하여금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피고 A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이를 통지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들은 수익자에게 그 채권액 또는 잉여금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된 이후에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수익자에게 그 배당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인 반면, 이 사건은 원고가 가압류채권자로서 선순위 채권자들이 배당받은 나머지를 배당받고 수익자인 피고 B은 배당을 받지 못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여서 그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위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의 잉여금 상당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이 사건 배당표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으로 하여금 피고 A에게 위 잉여금 상당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수익자인 피고 B으로 하여금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인 이 사건 배당표상 실제 배당할 금액 중 선순위 조세채권액 및 근저당채권액을 각 공제한 잔액, 즉 원고가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받은 금액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의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받는 것이 사실상의 우선변제에 해당하여 채권자평등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소채권자가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가액배상으로 금전을 지급받을 경우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는 있으나, 이는 이미 가액배상과 관련하여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결과이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물반환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사건 배당표상 피고 B의 잉여금 상당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까닭에 피고 A에게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는 방식의 원상회복도 불가능하므로, 원고에 대한 사실상의 우선변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김유신

별지